##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5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이명수·이종배·권영세

김태흠 · 성일종 · 박덕흠

최춘식 · 김승수 · 송석준

최승재 · 강기윤 · 추경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 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0조의2제5항).
- 나.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승인을 생략함(안 제5조 제7항 신설).
- 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을 신설함(안 제7조제8항 신설).
- 라.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 마.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의2제1항)
- 바.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 2제4항 신설).
- 사.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25조제1항).
- 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 천의 공동급수를 제외함(안 제31조의2).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고시하여야 한다"를 "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4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5항제2호를 고려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5호 중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제하였을 때에는"을 "해제할 때에는 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요하다고"를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1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	⑥
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	
는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u> 바	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
<u>여야 한다</u>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u>&lt;신 설&gt;</u>	<u>시하여야 한다</u> . ⑦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
	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u>과할 수 있다</u> .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저 ~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략) <신 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저 허가등 의제) ① (생략) 1. ~ 14.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
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
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ll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시·도지사의 승인을</u>
생략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시·도지사는 제5항제2호를</u>
고려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개
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
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 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등 의제) ①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15.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 하천 점용의 허가
- 16. ~ 29. (생략)
- ② ~ ④ (생략)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 허가등 의제) ① (생 략)
  - 1. ~ 4. (생 략)
  -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삭 제〉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 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진 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 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체계 구축) ① ~ ③ (생략) <신 설>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 하천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 용허가 16. ~ 2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할 때에는 계획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허가등 의제)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 체계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 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 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 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② (생략)

- 1. ~ 2. (생략)
-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 <삭 제> 수
-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에 위탁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 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 요하다고----

- 1.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